

(주)영원무역 보수위원회운영규정

제 1 조(목적 및 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설치된 보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보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(정의)

-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“임원”이란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와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상근 미등기 임원을 말한다. <개정 2025.11.10>
- ② “사외이사”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- ① 보수위원회는 임원의 보수 체계 관련사항을 심사 및 승인하고,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, 결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보수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하고, 보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보수위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고, 보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.

제 4 조(보수위원회의 구성)

- ① 보수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보수위원회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보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제9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보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위원회의 개최)

보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.

1. 정기위원회 : 년 1회
2. 임시위원회 :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보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직접 보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보수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[1]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재적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보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보수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보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보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보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임원 보수의 한도
2. 기본연봉, 성과급(특별상여금), 주식매수선택권,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 등 임원 보상체계의 설계·운영 및 그 설계·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구체적인 보수 액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보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

제 11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보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 보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보고)

보수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간사)

- ① 보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재무담당임원 또는 인적자원팀장으로 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(기록)

본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기록들은 문서 및 기록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기록으로 관리 및 유지·보관한다.

제 16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자)

1. 본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